

# ‘불법 친환경농자재’ 단속 강화로 발본색원 할 것

‘리후렛·용기·포장지’의 농약 비료적 효과 과대선전, 경증가려 의법 조치할 것  
친환경농자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친환경농자재 공시제도 운영, 유통단속 강화

### 3. 외국의 주요 관리사례

#### 가. 독일

연방작물보호법에 근거하며 모든 자재는 연방생물연구소에 등록후 판매(전문위원회 구성 심의)한다. 검증절차를 보면, 생산업자가 제품, 명칭, 성분, 기능, 사용법, 작용기작, 화학 성분 및 잔류분석자료 분석법 등을 제출, 신청하면 25명의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심의 후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연방 “작물보호법”에 의거, 식물강화제로 연방생물연구소(BBA)에 신고하면 BBA에서 식물강화제 목록을 작성, 여기에 등재된 것만 판매 허용한다. 식물강화제의 범위는 △해로운 유기체에 대한 작물의 저항성 증진 물질 △기생 생물과 관련이 없는 손상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물질 △절화류 관상용 식물에 쓰이는 물질 등이다. 농약처럼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화학합성물질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다.

관리방식을 보면 등록심사기간은 4개월이며

등록요건은 규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인축의 건강과 지하수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인 성명, 주소, 상표명, 구성물(성분, 양), 작용양식, 사용방법, 라벨내용 등이며 표기사항은 “식물강화제” 및 등록번호는 필수이다. BBA, UBA(연방환경청), BgW(연방소비자건강보호 및 수의학연구소) 등의 합의에 의해 등록이 결정된다.

독일만이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환경보전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이며 법규화 의식 또한 강한 사회적 풍습 때문이다.

#### 나. 일본

지력증진법 제11조에 근거한다. 토양개량자재라 함은 식물재배를 돕고 토양특성 변화를 위해 토양에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며 명칭, 종류, 원료, 사용방법, 생산자, 무게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자재별로 관련협회에서 자체 품질 및

사용기준을 설정, 자율판매 (전국토양개량자재협의회 운영) 한다. JAS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에서 사용가능 자재 규정, 유기농산물 인증업체가 사용자재 세부기준 규격 설정, 관리하며 일본은 지난 7월 8일부터 목초액 인증협의회를 결성했다.

#### 다. 미국

국가유기농계획(NOP)에 의거, 허용합성물질과 금지 비합성물질 목록을 지정(작물생산물질과 보호물질로 구분) 하고 유기물검토협회(OMRI)에서 신청자재를 분석한 후 허용, 제한적 허용, 금지로 분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경우 농무성의 국가유기농계획(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의 규정에 적합한 농약일 경우에는 농약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EPA가 농약라벨에 로고와 함께 유기생산용(FOR ORGANIC PRODUCTION)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라. 스위스

IFOAM의 유기농 규격 기준에 근거하며 환경에 해가 없고 인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물질만 허용(화학적 합성물질 제한적 허용)한다.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자재 목록을 공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 마. Codex

분과위원회에서 2년마다 각국의 자재목록을 받아 검토한 후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허용자재 기본원칙은 유기농산물 생산원칙과 일치하고 사용목적에 필수적이며, 환경 및 인축에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 4. 관리방안

Codex 등 국제기준과 조화되고 외국사례 등

을 고려할 때, 현행 비료관리법·농약관리법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민간기능을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제도화 하여야 하며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



안 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

에 미등록된 자재에 대

해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만, 특성상 등록하기 어려운 자재는 『친환경농자재 공시제도』를 도입,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여부를 공개하는 한편 농약·비료적 효과를 과대 선전하거나 비료에 농약을 혼합하는 등의 불법 유사자재는 유통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 가. 「친환경농자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학계, 인증기관,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세부절차 및 자재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재 생산업자 등에서 의뢰한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원료·방법, 용도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지정된 사용가능 자재 또는 제품 여부에 대하여 분석, 검증한다. 협의회 운영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내규 등으로 시행한다.

#### 나. 친환경농자재 공시제도 세부 운영방안

전문가협의회에서 시중 유통량이 많고 농가 인지도가 높은 자재부터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공개한다. 자재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받아 주성분, 효능·방제가, 유해물질 등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

## ■ ■ 집중점검

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또는 제품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주성분, 효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비료·농약관리법 등과 보완관계에서 추후 협의회에서 논의한다. 협의회에서 검토된 시험성적서, 주원료, 용도, 제조자, 유효기간 등 자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공개 및 농업인 교육시 홍보하며 검증된 자재에 대해서는 포장지에 친환경농자재전문가 협의회에서 심의된 자재임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비료·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포장지에 “제품명” “친환경자재”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다. 비료·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비료와 농약도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한 자재를 별도로 분류하여 제품 포장지에 표시 가능토록 한다.

추진방안을 보면 유통 중인 친환경농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며 친환경농자재 공시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전문가협의회’를 설치하여 유통자재 검토 및 공시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검증항목은 주요성분, 사용가능 물질 여부, 유해물질

등이며 검증방식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검사성적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시된 자재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이나 농약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조·판매업자가 공시된 자재임을 포장지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한다.

### 다.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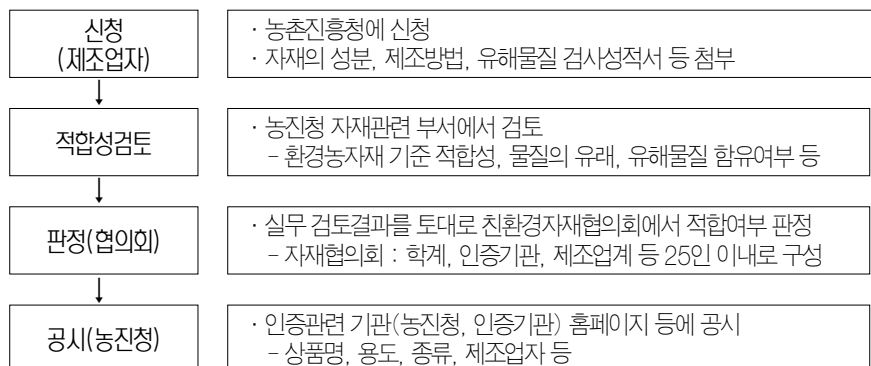
농자재 제품을 사용하여 농작물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즉,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재산 등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등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5. 유사 친환경농자재 유통 단속 방향

### 가. 친환경농자재 유통 관련 법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 사용가능한 자재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별표1에 118종을 고시하였는데 이는 명시적인 의미로서 농약·비료처럼 관리법에 의거 검증·등록을 받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아니다. 그러므로 병

### <절차>



## 친환경 유기농자재관리 제도화 방안 및 유통단속 방향(Ⅱ)

해충관리를 위해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해야 하며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 등을 위해 판매하려면 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받은 후에야 적극적인 선전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친환경농자재 공시제가 추진되더라도 이들 자재를 유통시킬 경우에는 농약·비료관리법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효과를 표시 판매하여야 한다.

### 나. 유사 친환경농자재 단속방향 및 사례

농촌진흥청에서는 목록공시제 등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유사자재의 유통방지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사용자재 검증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사 친환경자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하여 고발조치 할 것이다.

#### 〈무등록 농약〉

가짜 생산(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 명칭을 친환경농자재로 표시하고 보증성분은 활성액, 부식산, 기피제 등으로 등록된 제품인양 표기하며 야생동물 기피효과, 달팽이 기피효과, 섭

식방해에 의한 충 제거 등 농약의 효과를 표기할 경우

#### 〈무등록 비료〉

키토산, 목초액 등에 친환경농자재의 고시번호 등을 표기하여 무등록제품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고 수확량 증가, 종자발아촉진, 당도 증가, 엽록소 함량증가, 상품성 향상 등 비료의 효과를 표시할 경우

####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토양미생물제제비료 등으로 등록하고 해조류,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 등을 표기하거나 천연 살충 및 살균효과, 선충기피, 잡초방지제 등으로 표시할 경우

#### 〈원료외의 물질을 투입한 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등으로 등록하고 도마도톤, 지베렐린 등 생장조정제나 살균제, 살충제 등을 첨가하여 팜플렛, 리후렛 등을 활용하여 생장조정효과(착색촉진, 비대촉진, 발근촉진, 수경촉진)나 살충·살균효과를 선전하여 판매할 경우

그동안 농진청에서는 유사 친환경농자재를 '03년 104품목, '04년 43품목, '05년 10품목을 단속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무등록 농약 3건을 포함한 75건을 단속하여 시도지사에게 의법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상기 단속 지침에 의거, 농약·비료적 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중 리후렛으로 과대선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증을 가려 의법 조치함으로써 불법 친환경농자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Y

### 〈2005-2006 친환경농자재 유통실태〉

종 류	2005		2006	
	조사점수	비 율	조사점수	비 율
계	168	100	103	100
미량요소복비	75	44.6	50	48.5
4종복합비료	35	21	40	39
토양미생물제제	9	5	5	5
기타비료	15	9	5	5
유기질	5	3	-	-
퇴비	5	3	-	-
석회질	2	1	1	0.5
고토	1	0.9	-	-
친환경	21	12.5	2	2